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황수환**

- | |
|---|
| I. 서론
II. 평화협정의 이론적 관점
III. 평화협정의 유형 분류
IV. 사례분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V. 결론 |
| 주제어: 평화협정,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 국문초록 |

평화협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 무력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정치적 성격을 지닌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등으로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분쟁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평화협정에 대해 유형화한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협정이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이 나 협력을 넘어 제도화된 갈등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연속적 형태로 갈등전환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이고 이행적인 역할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2호(2016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6.12.21.2.61>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16)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전쟁 및 분쟁을 종결짓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는 1973년 ‘파리강화조약,’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민족, 종교, 인종 등 새로운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내전(civil war)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내전이 전체의 2/3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¹⁾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216개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대륙별로 보면 아프리카 127개, 중남미 32개, 아시아 27개, 중동 21개, 유럽 9개가 체결되었다.²⁾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평화협정,’ 1995년 보스니아 내전사태를 종결짓는 ‘데이튼 협정(Dayton Accord),’ 1998년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인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등 대륙별로 다양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전통적으로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이라는 형식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실질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단순히 상징적인 하나의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었다.³⁾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테러나 무력분쟁이 발생하여 또 다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호실체인정, 신뢰구축, 제도마련, 이행기구 설치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담긴 여러 가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를 보면, 1993년 ‘오슬로 협정 I’을 시작으로 ‘오슬로 협정 II’, ‘와이리버 협정 I’, ‘와이리버 협정 II’,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 등 각각 다양한 성격을 지닌 여러 가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들은 분쟁

1) Christine Bell, *On the Law of Peace-Peace Agreement and the Lex Pacificatoria* (New York: Oxford Press, 2008), p. 27; Jeffrey T. Checkel, *Transnational Dynamics of Civil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3.

2) “UCDP Peace Agreement Dataset 1975~2011,” http://www.pcr.uu.se/research/ucdp/datasets/ucdp_peace_agreement_dataset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3) 신범철,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p. 205.

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평화협정이지만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화협정문의 내용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인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제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성격인지 등에 따라 다른 성격이 존재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평화협정을 평화구축의 과정적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협정이 체결되는 국면과 상황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의 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됐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들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 사례는 이스라엘이 3차례의 중동전쟁을 치른 이후 1979년 이집트와의 평화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국가들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경우 민족, 종교 등 역사적으로 잠재해 있던 갈등이 탈냉전 이후 다수의 평화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다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가 구축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평화협정문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은 분쟁 당사자 간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합의 결과물이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원칙, 기준을 담고 있어서 각 협정문서마다 고유한 성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체결되는 여러 평화협정에 대해 유형화할 경우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분쟁지역의 평화협정 체결 사례를 분석하는 데 활용

4) 평화협정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I절의 “평화협정의 유형 분류”를 참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으로 1993년 ‘오슬로 협정 I,’ 1994년 ‘가자-예리코 협정,’ 1995년 ‘오슬로 협정 II,’ 1998년 ‘와이리버 협정 I,’ 1999년 ‘와이리버 협정 II,’ 2003년 ‘4자 로드맵,’ 2007년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화협정문에 대한 자료는 UN Peacemaker⁵⁾와 USIP(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⁶⁾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II절에서는 평화협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III절에서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도록 하겠다. IV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 사례를 살펴보고, V절 결론에서는 유형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의 함의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II. 평화협정의 이론적 관점

1. 평화협정의 정의

평화협정은 내전이든 국제전이든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의 역할을 한다.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부단한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하느냐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부단한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며, 분쟁 관련 당사자 간의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해결해가는 정치적인 협상 과정 중 하나로 본다면,

5) “UN Peacemaker: Peace Agreement Dataset Search,” <http://peacemaker.un.org/document-search> (검색일: 2015년 4월 20일).

6) “USIP,” <http://www.usip.org/category/publications/peace-agreements> (검색일: 2015년 4월 22일).

평화협정은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의 필요 조건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협정은 부차적인 의정서나 이행 합의서를 제외한 둘 혹은 그 이상의 분쟁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⁷⁾ 이는 좁은 의미에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의문서만으로 정의하여 평화의 과정에서 체결되는 각종 의정서나 협약서 등의 합의문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UCDP(The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는 평화협정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전국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그 내용에는 당사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계획과 과정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⁸⁾ 이는 평화협정의 개념을 단순히 분쟁의 종결이라는 결과가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다. 평화를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하나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분쟁이 종결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수많은 협정들을 평화협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분쟁 당사자 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되는 갈등을 보다 조화롭고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협상으로 본다면,⁹⁾ 이러한 협상의 과정 속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화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체결되는 합의문들이 평화협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적대행위의 중지, 조약의 체결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분쟁을 종결하여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평화협정으로 정의한다. 즉 평화협정은 평화조약(peace treaty), 평화의정서(peace protocol),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 등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되는 모든 합의문서

7) Leslie Vinjamuri and Aaron P. Boesenecker, *Accountability and Peace Agreements Mapping Trends from 1980 to 2006* (Geneva: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in Geneva, 2007), p. 5.

8) "Uppsala Universitet: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http://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 (검색일: 2015년 6월 20일).

9) 박하윤, "대체적 분쟁해결(ADR)로써 Legal Negotiation에 관한 연구," 『협상연구』 제17권 2호 (한국협상학회, 2014), p. 3.

들이라 할 수 있다.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군사적 목적으로 분쟁을 멈추는 의미를 지닌다면, 평화협정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문제들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평화협정은 전쟁 및 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기에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침조약과 구별되며 정전, 휴전협정과 구별할 수 있다.

2. 평화협정의 기존연구

1990년대 이후 미소 양극체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 및 내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했다. 아일랜드, 보스니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평화협정을 성격과 의미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평화협정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평화협정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연구자 간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화협정 역시 분쟁 당사자 간 합의의 결과물일 뿐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기에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즉 평화협정을 정의할 때 연구자 간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그 개념상의 차이로 인해 평화협정을 구분할 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단지 법적 의미에서 평화협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법적 의미, 의무, 자기결정권, 정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¹⁰⁾와 평화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인 UN의 개입과 중재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에서 평화협정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할 뿐이다.¹¹⁾ 그리고 탈냉전 이후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무력분

10) Christine Bell, "Peace Agreements-Their Nature and Legal Statu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0, No. 2 (2006); Bell (2008); Christine Bell and Catherine O'Rourke, "Peace Agreements or Pieces of Paper? The Impact of UNSC Resolution 1325 on Peace Processes and Their Agreement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9, No. 4 (2010).

쟁이 종결되면서 평화협정에 대해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적 분포와 내용에 따라 분석한 연구,¹²⁾ 평화협정이 평화를 지속시키는지 여부를 분석한 연구,¹³⁾ 정전협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조건과 전쟁 이후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연구¹⁴⁾가 있다. 탈냉전 이후 주로 내전의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3가량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¹⁵⁾

이들 연구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평화협정이 얼마나 체결되었는가는 단순한 수치를 밝히거나, 내전과 같은 정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평화협정의 조항 내용 중 정치·군사적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로 분석하였다. 기존연구 중에서 바드란(Ramzi Badran)은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역내 분쟁 사례를 통해 평화협정이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경험적 증거를 통해 분석했다.¹⁶⁾ 하지만 바드란 역시 평화협정이 제3자의 안전보장, 영토적 자치권, 권력공유의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안

-
- 11) Sydney D. Bailey, "Cease-Fires, Truces, and Armistices in the Practi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1, No. 3 (1977); David M. Morris, "From War to Peace: A Study of Cease-Fire Agreements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United Natio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1996).
 - 12) Peter Wallensteen and Margareta Sollenberg, "Armed Conflicts Conflict Termination and Peace Agreements 1989-96,"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4, No. 3 (1997); Stina Hogbladh, "Patterns of Peace Agreements-presenting New Data on Peace Processes and Peace Agreements," Paper presented at the 47th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San Diego, CA, 22-25 March, 2006 (2006); Vinjamuri and Boesenecker (2007).
 - 13) Virginia Page Fortna, "Scraps of Paper-Agreements and the Durability of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7 (2003); Ramzi Badran, "Intrastate Peace Agreements and the Durability of Pea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1, No. 2 (2014); Madhav Joshi, Erik Melander and Jason Michael Quinn, "Sequencing the Peace-How the Order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 Can Reduce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Postaccord Elec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0022002715576573 (2015).
 - 14) Scott D. Bennett, "Integrating and Testing the Models of Rivalry Du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2, No. 4 (1998); Suzzane Werner, "The Precarious Nature of Peace: Resolving the Issues, Enforcing the Settlement and Renegotiating the Te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3, No. 3 (1999); Virginia Page Fortna, *Peace Time: Cease-Fire Agreements and the Durability of Pea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15) Wallensteen and Sollenberg (1997); Lotta Harbom, Stina Hogbladh and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 and Peace Agreement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5 (2006).
 - 16) Badran (2014), pp. 193-217.

정성을 확보한다는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평화협정의 다양한 유형과 성격을 구분하기보다는 법적인 의미에서 전쟁의 종결과 분쟁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법적 형식규범 차원의 분석을 넘어 정치적 의미에서 평화협정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각 국면마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평화협정의 유형 분류

본 논문에서는 평화협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 무력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정치적 장치의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정전, 휴전협정과 달리 분쟁 당사자 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 지속하기 위한 것이기에 평화조약, 평화합의문, 평화선언, 평화의정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된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각각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원인 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정치적 협상과 합의 과정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평화협정은 분쟁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인 틀이기에 각각의 평화협정에 따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분쟁상황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협정을 체결된다고 할 때, 이를 유형화하여 분류한다면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분쟁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negotiation) 차원에서 그 성격을 단계별로 구분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첼(C. R. Mitchell)은 분쟁 상대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과정을 예비 협상(preliminary bargaining), 대면 협상(face-to-face negotiation), 이행(implementation)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¹⁷⁾ 예비 협상은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

17)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기로 관련 분쟁 당사국 간에 동의하는 시기이다. 대면 협상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당사자 간 서로가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이행은 우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나머지 부분을 처리한 뒤 협상의 내용이 잘 실천하도록 서로 동의하고 보장하는 시기이다. 미첼은 3단계 협상의 진행과정은 이상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협상이 예비 협상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보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뒤 대면 협상단계로 진입하더라도 진정한 갈등 해결을 위한 이행의 과정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벨(Christine Bell)은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유형을 법적인 성격에 따라 사전협상협정(pre-negotiation agreement), 기본/실질협정(framework/substantive agreement), 이행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¹⁸⁾ 사전협상협정은 분쟁 당사자 간 각종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잠정적인 형태로 체결된다. 기본/실질협정은 평화협정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단계이고 이행협정은 기본/실질협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행사항을 마련하고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로 규정하였다.

협상 및 법적인 유형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에 대해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예비적 사전협상이 진행되어 상호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및 의도를 탐색하는 시기이다. 협상 상대방의 태도와 자세를 파악하고 이후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을 서로 모색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는 규범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주로 본격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핵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말하며 합의된 사항은 공동선언문이나 합의서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2단계는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이 도출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실천되는 시기이다.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호간 발생하여 포괄적인 협정안과 적극적인 실천방안이 체결되는 제

p. 207.

18) Bell (2008), pp. 56-63.

〈표 1〉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내용
사전협상협정 (pre-negotiation agreement)	■ 탐색적, 사전 예비적 협정 - 맥락 파악 ■ 예비적 협정 - 상호동의 ■ 사전협상적협정 - 협상 과정의 관리 - 평화협상 과정의 기초
기본/실질협정 (framework/ substantive agreement)	■ 로드맵 협정 - 협정의 원칙과 과정 설정 ■ 부분적 협정 및 의정서 - 일부 주요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 절차를 규정 ■ 포괄적 협정 - 모든 주요 문제를 처리 ■ 양자 협정 - 갈등의 요소 중 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양자 협정들 〈잠정적/반복적 협정〉 • 잠정적으로 갈등 최소화 시도, 협상의 당사자 재회부 〈하위/부차적 협정〉 • 포괄적인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특정 문제 처리 • 협정 체결 이후 해당기관과 ‘난민 귀환’과 같은 문제 처리
이행협정 (implementation agreement)	■ 분명한 이행협정들 ■ 검증과 모니터링 협정들 - 법적 조약의 결정, 지역적 안정을 위한 규약, 입법 등의 정상화 과정

출처: Bell (2008), p. 66을 재구성

도화 단계라 할 수 있다.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협상의 모든 관련 당사자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실현가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 간 모든 주요 문제를 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3단계는 실천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후 이를 이행하는 시기이며 또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시기이다. 합의안에 따라 실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재협상을 통해 수정하고 재조정하여 실천하는 이행화 단계라 할 수 있다. 협상과 관련한 일부 당사자가 부분

적인 몇 가지 문제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기에 평화협정의 형식이 주로 부분적 협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¹⁹⁾

본 논문은 평화협정의 유형을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등 3가지 유형으로 개념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예비적 기초협정

평화협정의 본질적인 목적이 분쟁 당사자 간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기 않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라 한다면, 분쟁 당사국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서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앞서 분쟁 당사국 간 상호 수용가능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적 기초형태의 협정을 맺는다.²⁰⁾ 주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실질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협정들이 예비적 기초협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평화예비기(peace preliminaries)라 할 수 있다. 주로 합의서, 공동선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평화예비기는 분쟁당사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 발효시키기 전에 설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평화협정이 주로 전쟁을 중지하고 교전국 간의

19) 3평화협정의 체결 형식과 내용에 따라 완전협정(full agreement), 부분적 협정(partial agreement), 평화과정협정(peace process agre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협정은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협상의 모든 관련 당사자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적 협정은 협상과 관련한 일부 당사자가 부분적인 몇 가지 문제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적 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거나,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동의사항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화과정협정은 분쟁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절차를 마련하고 협상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Wallensteen, *Peace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2011), pp. 148-149.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완전협정은 60개, 부분적 협정은 115개, 평화과정협정은 41개이다. “UCDP Peace Agreement Dataset 1975~2011,” http://www.pcr.uu.se/research/ucdp/datasets/ucdp_peace_agreement_dataset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20) Nita Yawananarajah and Julian Ouellet, “Beyond Intractability: Peace Agreements,” September 2003, <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essay/structuring-peace-agree> (검색일: 2016년 9월 5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평화예비기는 분쟁당사국 간의 적대 행위를 종결시키는 데 의미를 둔다.²¹⁾ 평화예비기는 평화협정이 실제로 체결되거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의 현상으로 전쟁상태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다. 즉, 평화예비기에는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분쟁당사국 간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포괄적 원칙과 일부 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후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체결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적 기초협정은 사전협상협정(pre-negotiation agreement)과 잠정·예비적협정(interim or preliminary agre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²⁾

사전협상협정은 일정, 의제, 참가자, 중재자의 역할들을 설정하고 추후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 작성 등 기초적이고 절차적 문제들을 합의한다. 사전협상협정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충돌을 예방 및 관리하고 향후 평화협정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잠정·예비적 협정은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잠정·예비적 협정은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극복하고 항구적이고 안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 간 협상의 시기와 방법들을 결정한다. 평화협정의 본질적 내용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 상호존중 및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성격을 논의하게 된다. 잠정·예비적 협정은 사전협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화협정에 대한 절차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여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 전쟁종지(termination of war)와 적대행위 정지(suspension of hostilities)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쟁종지는 말 그대로 교전국 간 전쟁이 중지, 중단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적대행위 정지란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행위 즉 전투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전쟁의 상태가 유지되지만 전쟁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헤이그협약의 부록에 있는 헤이그 규약에서는 적대행위의 정지를 휴전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문광건, “한반도 정전협정의 본질과 평화조약의 필요성,” 『국방정책연구』 제49권 (한국국방연구원, 2000), pp. 96-98.

22) Bell (2008), pp. 56-63; Yawanarajah and Ouellet (September 2003).

2. 실질적 기본협정

실질적 기본협정은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고 더 이상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평화의 상태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분쟁상태를 항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다. 실질적 기본협정은 전문, 개별조문, 부속합의서 등의 법적인 구조와 형태를 갖춘 합의문으로 보통 ‘평화협정’으로 불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²³⁾ 대표적으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The Egyptian-Israeli Peace Treaty, 1979.3.26), 북아일랜드의 성 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1998.4.10), 보스니아의 데이튼 협정(Dayton Accords, 1995.12.14) 등이 있다.

실질적 기본협정은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구조적/framework 성격を 지닌다. 이는 분쟁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이며,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와 원칙 등을 합의하는 구조적 협정의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 안보, 경제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 협정의 세부 실행 사항들은 부속서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질적 기본협정에서는 통치 및 자치권, 선거, 사법,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질서 제도와 군사적 대치를 종료하기 위해 군대의 재배치, 해체, 철군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문화, 경제분야의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실질적 기본협정은 전쟁 상태를 종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분쟁 당사자 간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상태’의 합의문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 기본협정은 분쟁 당사자 간 평화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인 평화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수준에서 체결된다.

23) 최철영,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 『민주법학』 통권 3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pp. 166-167.

3. 보완적 이행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은 실질적 기본협정에서 합의된 포괄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정이다. 실질적 평화협정의 내용을 실행, 수정, 보완하여 궁극적인 평화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협정이다.

보완적 이행협정은 실질적 기본협정의 실천과정에 나타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정의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하는 특징을 지닌다. 실질적 기본협정이 포괄적이고 거시적이라고 한다면, 보완적 이행협정은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협정이라 할 수 있다. 보완적 이행협정은 공식적 문서로 합의하지 않을 수 있고 구두 계약, 서신 교환 등의 비공식적 형태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추적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완적 이행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국제법적 형태의 협정보다는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진 합의문이 나타나면서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²⁴⁾ 보완적 이행협정은 체결 이후 이를 실현하고 달성

〈표 2〉 평화협정의 유형, 성격, 단계 분류

유형	성격	단계	내용
예비적 기초협정	규범화	평화 모색 단계	- 평화협상 과정의 기초 단계 - 평화협정의 의제 설정 및 방향을 설정 - 상호 실체 인정, 신뢰 구축, 공감대 형성 -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개입에 따른 중재 - 실질적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잠정적 성격
실질적 기본협정	제도화	평화 설정 단계	- 협정의 원칙과 이행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단계 - 분쟁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 새로운 법·정치적 제도 구축 -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성격
보완적 이행협정	이행화	평화 추진 단계	- 세부적 이행, 실천사항 마련 - 협정의 사항에 대한 제3자의 검증 및 모니터링 -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합의사항 도출 -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미시적 성격

24) 최철영 (2007), p. 169.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심화하여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빈곤, 정치적 탄압, 이념 문제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상태’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IV. 사례분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1.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 과정은 히르쉬필드(Yair Hirschfeld)가 분류한 5단계를 참고하여 설명할 수 있다.²⁵⁾

첫 번째 단계(1973~1977)는, 팔레스타인이 중동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이스라엘의 입장을 무시하고 오직 팔레스타인의 입장만 고수하고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시기이다. 팔레스타인은 제1~4차 중동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거주지역이 황폐화되고 난민이 발생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팔레스타인의 입장은 이스라엘과는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배제하였으며, 아랍국가들을 중심으로 중동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이스라엘을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1977~1982)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외교적 전술에 고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평화협정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팔레스타인보다는 다른 대상자를 택하여 평화를 구축하는 전술을 보였다. 협상이 어려운 상대자보다는 비교적 협상이 용이한 상대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1978년 9월 17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The Camp David Accords),’

25) Yair Hirschfeld, “Dynamics of Israel-Palestinian Negotiations,” in Barry Rubin, Joseph Ginat and Moshe Ma’oz (eds.), *From War to Peace: Arab-Israeli Relations, 1973-199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4), pp. 101-106.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Peace Treaty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을 들 수 있다.²⁶⁾

세 번째 단계(1982~1989)는, 팔레스타인이 두 번째 단계의 외교적 실패를 교훈삼아 이스라엘의 외교 전략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시기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에 성공한 이후 요르단, 레바논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으로 다른 상대자와 협상을 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과 직접 협상을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시기이다.

네 번째 단계(1989~1993)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동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팔레스타인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협상 대상으로 삼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샤밀-라빈 계획(The Shamir-Rabin Pla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⁷⁾ 또한 냉전의 해체와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친이스라엘의 외교노선에서 변화하였고, 이스라엘의 단순히 힘의 우위로만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추진 노력은 변화된 국제질서 환경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1991년 10월 ‘마드리드 중동 평화회담’²⁸⁾이 개최되어 아무런 합의도 없이 회담이 마무리되었으나,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이 처음으로 모여 중동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1993~현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체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평화협정이 체결된 시기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종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²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26) 송대성,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중동 및 북아일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00), p. 50.

27) 송대성 (2000), p. 51.

28) 1991년 10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모여 중동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이스라엘의 점령지 반환 문제와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 국가인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

다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히르쉬필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단계 분류 중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섯 번째 단계의 평화협정문서를 중심으로 평화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도록 하겠다.

2. 평화협정의 내용과 유형

1) 오슬로 협정 I³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골자로 공존과 평화를 추구

- 29) 1993년 9월 13일 ‘임시 자치정부에 관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Government Arrangements, Oslo Accords I),’ 1994년 5월 4일 ‘가자-예리코 협정(Agreement on the Gaza Strip and the Jericho Area, Cairo Agreement),’ 1994년 8월 29일 ‘권한과 책임 예비이양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Preparatory Transfer of Powers and Responsibilities),’ 1995년 9월 28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대한 잠정 협정 (Israeli-Palestinian Interim Agreement o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Oslo Accords II),’ 1996년 5월 9일 ‘헤브론의 잠정적인 국제적 존재 협정(Agreement on the Temporary International Presence in the City of Hebron, Hebron I),’ 1997년 1월 17일 ‘헤브론 통치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Redeployment in Hebron),’ 1997년 1월 21일 ‘헤브론의 잠정적인 국제적 존재 협정 II(Agreement on Temporary International Presence in the City of Hebron II, Hebron II),’ 1998년 10월 23일 ‘와이리버 비망록(Wye River Memorandum, Wye River I),’ 1999년 9월 4일 ‘삼 엘셰이크 비망록(The Sharm el Sheikh Memorandum, Wye River II),’ 1999년 10월 5일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사이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Safe Passage betwee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2003년 4월 3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지속적 해결을 위한 수행기반 로드맵(A Performance-based Road Map to a Permanent Two-State Solution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Quartet Roadmap),’ 2004년 6월 6일 ‘철수계획에 대한 내각 해결방안(The Cabinet Resolution regarding the Disengagement Plan),’ 2007년 11월 27일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Annapolis Conference Joint Understanding on Negotiations),’ 2011년 5월 3일 ‘파타와 하마스 간 협정(Agreement between Fatah and Hamas),’ 2012년 11월 21일 ‘가자지구 휴전에 관한 이해(Understanding Regarding Cease-fire in Gaza Strip),’ 2014년 7월 15일 ‘이집트 구상(Egyptian Initiative)’ 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문서들이 있다.

- 30) ‘오슬로 협정 I(Oslo Accords I)’의 정식명칭은 ‘임시자치정부에 관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Government Arrangements)’이다. 본 합의문을 ‘오슬로 협정 I’로 불리는 이유는 1992년 말부터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이스라엘 노동당 양측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중동의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오슬로를 협상무대로 제공하고 양측 간 비공식 접촉을 중재하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하기 위한 첫 합의가 1993년 9월 13일 ‘임시자치정부에 관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Government Arrangements, 이하 오슬로 협정 I)’이다.

‘오슬로 협정 I’은 팔레스타인 임시자치정부의 의회 수립을 위한 선거를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중간 준비 단계로 설정하였고, 중간 준비 단계의 성격을 지닌 임시자치정부는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최종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를 대비하여 5년간의 준비 이양기간을 설정했다. ‘오슬로 협정 I’의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 내 예리코시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자치가 시작되어, 점령지에 대한 최종 지위는 1995년 12월까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오슬로 협정 I’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처음으로 협상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 인정하였다. 이전 마드리드 중동 평화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들이 함께 중동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공식적인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 논의자세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 I’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실체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평화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다른 세력인 하마스(Hamas: Harakat al-Muqaqama al-Islamiyya)와 이슬람지하드 등 강경 세력은 이스라엘을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에 비판하고 추후 평화협상 진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슬로 협정 I’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상호간에 법적·정치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 및 상호존중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정착과 화해를 추구하기 위한 원칙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에 따른 점령지를 양보하고 팔레스타인은 테러방지와 평화를 약속한 첫 번째 합의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오슬로 협정 I’은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잠정적 자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오슬로 협정 I’은 선거, 사법권, 이양기와 영구적 지위에 관한 협상, 권한과 책임의 예비 이전, 임시협정, 공공질서와 안전, 법률과 군사 원칙, 공동교섭위원회, 경제분야 협력, 요르단과 이집트 간의 교섭과 협력, 이스라엘군 철군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 내용들이 즉시 실천되기보다

는 잠정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수십 년간에 걸친 대립과 갈등을 한순간에 종식시키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임시자치정부라는 잠정기간을 설정하여 양측 간 정치적 합의와 절차를 통해 평화로운 공존, 상호존중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슬로 협정 I’에서 팔레스타인 임시자치정부의 의회 수립을 위한 선거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중간 준비 단계로 설정했다. 팔레스타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예리코지역에서 철수하는 기간과 팔레스타인 의회의 취임 전까지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중간 준비 단계의 성격을 지닌 임시자치정부는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최종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를 대비하여 5년간의 준비 이양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잠정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동예루살렘 문제, 난민 문제, 안보협약 및 국경선 문제 등 팔레스타인의 항구적 지위에 관련하여 ‘오슬로 협정 I’이 잠정적 협정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제외시키고, 1995년 12월 13일에 점령지 지위를 규정할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잠정적이고 예비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오슬로 협정 I’은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적 성격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협정문에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공동교섭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양측이 합의한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며,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사항은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아울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동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자지구 및 요르단 강 서안지구의 경제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슬로 협정 I’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구축하는 시작 단계에서 체결된 첫 합의라는 점과 임시자치정부 구성과 잠정적 이양기간을 설정하여 상호 실체인정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협정의 내용이 자치정부

수립과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분쟁의 포괄적으로 근본적인 쟁점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과 새로운 원칙과 제도화를 구축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실질적 기본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슬로 협정 I’은 평화협정의 규범화를 형성하는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실질적 기본협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가자-예리코 협정³¹⁾

‘오슬로 협정 I’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팔레스타인 경찰과 이스라엘군의 협력 방향 문제, 예리코지역의 지리적 범위 설정 문제, 자치지역과 이스라엘과의 경제관계 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가자지구와 예리코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 및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와 재배치 등 ‘오슬로 협정 I’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협정으로 1994년 5월 4일 ‘가자-예리코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권력이양, 자치권, 사법권, 안보, 공공질서, 통행, 경제관계, 인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요르단과 이집트와의 협력, 분쟁해결, 적대행위 방지, 난민, 잠정적인 국제적 존재인정 등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3개 조항은 시민권, 법률, 안보, 경제 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시민권 문제는 가자지구와 예리코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통치하던 행정적 사항을 팔레스타인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즉 교육, 보험, 관광, 사회복지, 우편, 교통, 건강, 환경, 세금, 주민등록 등 모든 시민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원활한 권한이양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공동시민행정업무협조위원회(CAC: A Joint Civil Affair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법률적 문제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서의 관할권, 사법권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권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과

31) ‘가자-예리코 협정’의 영문명은 ‘Agreement on the Gaza Strip and the Jericho Area: Cairo Agreement’이며, 1994년 5월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일명 ‘카이로 협정’으로 불린다. 본 협정은 미국, 러시아, 이집트가 증인으로 섰다.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안보 문제는 가자지구와 예리코지역에 대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 사항은 이스라엘의 책임하에 두고, 팔레스타인은 내부 질서 유지 및 안전 등의 자치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요르단 및 이집트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분쟁 및 적대행위를 예방하는 조치에 합의하였다. 경제 문제는 1994년 4월 29일 파리에서 합의한 경제관계에 관한 의정서를 토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수출입, 금융, 세금,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자-예리코 협정’은 ‘오슬로 협정 I’의 합의 사항 이행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에 보완적 이행협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오슬로 협정 I’의 이행과정에서 노정된 각종 문제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입장차로 인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을 지닌 ‘가자-예리코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가자와 예리코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팔레스타인의 잠정적 자치가 실시되었다. 이후 가자와 예리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자치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1995년 9월 28일 ‘오슬로 협정 II’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확대에 이어지게 되었다.

3) 오슬로 협정 II³²⁾

‘오슬로 협정 II’는 ‘오슬로 협정 I’에서 팔레스타인이 보건, 교육, 복지, 관광, 문화 등 5개 분야에서만 부여받은 자치권만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자치지역을 가자지구와 예리코지역에서 요르단 강 서안지구의 7개 도시³³⁾와 그 인근 마을로 확대하기 위해 체결된 잠정적 협정이다. ‘오슬로 협정 II’는 ‘가자-예리코 협정’에 서명한 1994년 5월부터 1999년 5월까지 5년 동안 한시적

32) ‘오슬로 협정 II’의 정식명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대한 잠정 협정(Israeli-Palestinian Interim Agreement o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이다. 이 협정문은 1995년 9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라빈 이스라엘 총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압바스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국제국장이 서명하고 미국, 러시아, 이집트, 요르단, 노르웨이, EU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체결되었다. 1993년 ‘오슬로 협정 I’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협정으로 ‘오슬로 협정 II(Oslo Accords II)’로 불린다.

33) 요르단 강 서안지구의 7개 도시는 헤브론(Hebron), 나블루스(Nablu), 라말라(Ramallah), 예닌(Jenin), 툴카렘(Tulkarm), 카질라(Qalqilya), 베들레헴(Bethlehem) 등이다.

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오슬로 협정 II’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구성 및 자치권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자치지역을 확대하고,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1995년 3~4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주민들은 이 선거를 통해 8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였고 자치정부를 조직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철수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찰 간 공동안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치안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거주 주민의 구성비율에 따라 관할 지역을 A, B, C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의 권력이양 및 통치 등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 문제도 합의하였다. 이스라엘은 신뢰, 상호협력 증진 및 화해의 의미로 3회에 걸쳐 팔레스타인 정치범 죄수를 석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슬로 협정 II’는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선거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의회의 자치권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상호 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합의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1994년 5월에 체결된 ‘가자-예리코 협정’에 서명한 시점부터 1999년 5월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잠정적 성격을 지닌다. ‘오슬로 협정 II’에서는 권한 이양, 선거, 팔레스타인 의회 구성 및 규모, 의회의 권한 및 책무, 관할권, 이스라엘군 철군, 안보, 공공질서, 팔레스타인 경찰권, 적대행위 방지, 신뢰구축, 인권, 법의 지배, 법적 책임과 의무, 분쟁해결, 경제관계, 요르단과 이집트와 협력, 범죄인 석방,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통행 문제 등 ‘오슬로 협정 I’과 비슷하게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오슬로 협정 II’는 팔레스타인 의회의 자치권에 대한 권한과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사항과 함께 ‘오슬로 협정 I’의 합의사항에 대한 결론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오슬로 협정 II’는 ‘오슬로 협정 I’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슬로 협정 II’는 ‘오슬로 협정 I’과 유사하게 예비적 기초협정과 실질적 기본협정의 성격이 나타난다.

4) 와이리버 협정 I³⁴⁾

‘와이리버 협정 I’은 미국 워싱턴에서 1998년 10월 23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Yasser Arafat) PLO 의장이 서명하고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체결된 협정문이다. 서문에서는 1995년 9월 28일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 II’과 1997년 1월 17일에 체결된 ‘헤브론 통치에 관한 의정서’³⁵⁾ 등의 선행 협정들에 대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추가적인 철군과 안보 및 그 외 기타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계적 과정을 설정하여 일정표에 맞춰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이스라엘군의 철군 촉진, 안보 문제 실천 및 협력, 경제 문제, 항구적 지위협상 등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 강 서안지역 13%에서 향후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군하기로 하였다.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테러나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단계적 조치를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천 사항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불법적 테러 단체의 규제, 불법무기 단속, 선동조장 행위를 방지하며, PLO 헌장에 명문화된 ‘이스라엘 파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치범 3,500명 중 750명을 한 달에 250명씩 3차례에 걸쳐 석방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경제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실시하고, ‘오슬로 협정 II’에 따라 설립된 모든 위원회를 유지하고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³⁶⁾ 또한 사람과 물자에 대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교섭을 실시하고, 가자지역의 항구의 건설과 사용 및 가자지역의 국제공항 이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항구적 지위협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9년 5월 4일을 목표로 합의를 도출하기

34) ‘와이리버 협정 I’의 정식명칭은 ‘와이리버 비망록(Wye River Memorandum)’이며, ‘Wye River I’로 불린다.

35) 헤브론시는 잠정 협정에 명시된 특별 합의 대상이었다. 1997년 1월 17일 체결된 ‘헤브론 통치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Redeployment in Hebron)’는 오슬로 협정이 명시한 특별 합의 대상인 헤브론시에서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합의한 의정서이다.

36) 위원회는 감시조정위원회(The Monitoring and Steering Committee), 공동경제위원회(JEC: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시민업무위원회(CAC: The Civil Affairs Committee), 법률위원회(The Legal Committee), 상설협력위원회(The Standing Cooperation Committee) 등을 의미한다.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협상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서안과 가자지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서안과 가자지구의 지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와이리버 협정 I’은 서문에서는 ‘오슬로 협정 II’과 ‘헤브론 통치에 관한 의정서’ 등 선행 평화협정들에 대한 원활한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합의라 밝히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철군 및 안보 문제 실천 및 협력, 경제 문제, 항구적 지위협상 등에 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간표를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와이리버 협정 I’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화해와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실질적 기본협정의 성격과 이스라엘의 철군 등 협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시간표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는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을 지닌다.

5) 와이리버 협정 II³⁷⁾

‘와이리버 협정 II’는 1999년 9월 4일 이집트의 샬 엠 셰이크(Sharm al-Sheikh)에서 바라크(Ehud Barak)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PLO 의장이 서명하고 무바라크(Hosni Mubarak) 이집트 대통령,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미국 국무장관, 압둘라 2세(Abdullah II Ibn Al Hussein) 요르단 국왕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와이리버 협정 II’는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와이리버 협정 I’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재개시키기 위한 후속적인 보완협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항구적 지위협상, 이스라엘군 철군, 안보 문제, 정치범 석방, 안전한 통행보장 등이 있다. 항구적 지위협상은 UN 안보리 결의안 242와 338의 이행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것으로 1단계에서 정치범 석방을, 2단계에서는 1999년 9월 13일까지 이스라엘 철군의 진전된 이후 협상을 재개하여 향후

37) ‘와이리버 협정 II’의 정식명칭은 ‘샬 엠 셰이크 비망록(The Sharm al-Sheikh Memorandum)’이며, ‘Wye River II’로 불린다.

5개월 내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 팔레스타인 최종지위 협상을 2000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스라엘의 철군은 합의된 요르단 강 서안지역 13% 가운데 이미 시행한 2% 이외에 나머지 11% 지역에서 2000년 1월까지 철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정치범을 1999년 9월 5일에 200명, 1999년 10월 8일에 150명 총 350명을 석방하기로 하고, 팔레스타인은 불법 무기를 수거하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하여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역 사이의 완전한 자유 통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와이리버 협정 II’는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와이리버 협정 I’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재개시키기 위한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을 지닌다. ‘와이리버 협정 II’에 따라 1단계 정치범 석방, 2단계 이스라엘 철군의 진전된 이후 2000년 5월에 협상을 재개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요르단 강 서안지역에서 6.1%를 추가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또한 1993년 ‘오슬로 협정 I’에 의한 평화과정이 이후 요르단 강 서안 및 가자지구의 약 42%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직접적인 또는 부분적인 관할로 이양되었다.³⁸⁾ 하지만 마지막 3단계 팔레스타인 최종지위 협상을 2000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최종적 지위 문제를 비롯하여 동예루살렘의 지위 문제, 이스라엘 군의 최종적인 배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 문제, 국경 획정 문제, 이스라엘 정착촌의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의 과정은 진전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최종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2000년 7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하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PLO 의장 사이에 15일간 진행되었으나 동예루살렘 지위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되었다. 이어 이스라엘에서는 강경파인 2001년 2월 리쿠르당 아리엘 샤론(Ariel Sharon)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의 이

38) 최영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과정: 2000년 캠프데이비드 협상 실패요인 분석 및 향후 아-팔 평화과정의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1년 12월 7일).

행은 실천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6) 4자 로드맵³⁹⁾

2002년 9월 중동평화를 위한 미국, 러시아, UN, EU 등 4자 회의에서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방안에 합의하였고, 2003년 4월 30일 동 4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평화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지속적 해결을 위한 수행기반 로드맵(이하 4자 로드맵)’의 전문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오직 폭력과 테러를 종결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팔레스타인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추어 민주주의에 대한 실행 능력과 의지를 가진 지도부를 가질 때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로드맵은 1990년 마드리드 평화회담을 포함하여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결의안 242, 338, 1397 등 국제적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1967년 6월 전쟁(3차 중동전쟁)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토점령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드맵의 1단계는 폭력 중단 및 신뢰회복 단계로 테러와 폭력행위의 중지,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활 정상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준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합의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팔레스타인은 무조건적으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이스라엘과 안보협력을 재개하도록 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는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조치들을 실시하고, 2001년 3월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에서 철수하고 향후 정착촌의 건설을 동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9월 28일에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이스라엘 병력을 철수하도록 합의하였다. 로드맵 2단계는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모

39) ‘4자 로드맵’의 정식명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지속적 해결을 위한 수행기반 로드맵(A Performance-based Road Map to a Permanent Two-State Solution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Quartet Roadmap)’이다.

든 준비와 노력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으로 팔레스타인 선거 이후 합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미국, 러시아, UN, EU 등 중재자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일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3단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평화협정 체결과 분쟁을 종료하는 단계이다. 팔레스타인 개혁이 실현되어 행정력이 안정되고 효율적인 안보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05년에 항구적인 지위협정(permanent status agreement) 즉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항구적 지위협정을 통해 2005년까지 예루살렘 분쟁, 국경, 난민, 정착촌 문제 등을 양측 분쟁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시리아 문제 등 포괄적인 중동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4자 로드맵’은 ‘오슬로 협정 I’에서 시작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들의 내용의 실천과 이행을 다시금 확인하는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이 있으며, 상호 신뢰회복 단계를 설정하여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점에서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4자 로드맵’ 채택 이후 여전히 이 협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여 2005년까지 로드맵 이행의 진척은 미진하였다. 특히 ‘4자 로드맵’은 각 단계마다 구체적 이행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하였고, 이스라엘이 이 로드맵의 전제 조건 사항인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미루면서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4자 로드맵’ 이행을 위해 외교적 노력으로 2006년 6월 올머트(Ehud Olmert) 이스라엘 총리와 아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장치정부수반가 회동하여 로드맵 이행 재개 의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조직으로 지목한 하마스 세력이 2006년 1월에 실시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하고 가자지구 분쟁 및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로드맵은 폐기되었다.⁴⁰⁾

40)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 『외국 평화협정 사례 연구』(서울: 외교통상부, 2009), pp. 23-24.

7)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⁴¹⁾

2007년 11월 27일 미국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49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경제단체 등이 참가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2008년 말까지 중동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양자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중동평화회의를 개최하였다.⁴²⁾ 본 회의에서 중동의 평화를 위한 노력 및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과정의 원동력을 재개하기 위한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를 발표하였다.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간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고 공존하는 방안을 위한 노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발생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말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2007년 12월 12일에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3년 ‘4자 로드맵’에서 합의한 의무사항들을 즉시 이행하기 위해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3자 메커니즘(mechanism)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로드맵의 지속적 이행 의무를 가지며, 미국은 이행 사항을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는 향후 평화협상을 위한 일정과 틀을 제시하여 부분적으로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협정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이기에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도 지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이전의 평화협정들이 주로 기존 쟁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반면,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는 향후 논의를 위한 일정과 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리버만(Avigdor Lieberman)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내각과 의회가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를 인준한 적이 없기에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고 법적 의무가 있는 국제협약은 2003년 체결된 ‘4자 로드맵’이라고 언급하는 등 합의이행의 한계를 나타냈다.⁴³⁾

41)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의 영문명칭은 ‘Annapolis Conference Joint Understanding on Negotiations’이다.

42)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 (2009), p. 23.

43)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 (2009), pp. 28-29.

〈표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의 내용과 유형

체결일	협정문	주요 내용	유형
1993.09.13	오슬로 협정 I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Government Arrangements)	• 가자지구 및 요르단 강 서안내 예리코시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및 팔레스타인 임시자치 정부에 관한 이양(1994년 4월까지) • 팔레스타인 총선거 실시(1994년 7월까지) • 팔레스타인 항구적 지위 확정(1995년 12월 까지) • 잠정적 자치는 향후 5년간 실시하고, 자치지역의 최종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은 자치 실시 2년 후 시작 • 팔레스타인해방기구 협상대표로 최초 인정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1994.05.04	가자-예리코 협정 (Agreement on the Gaza Strip and the Jericho Area, Cairo Agreement)	• 이스라엘군 철수 및 재배치 • 팔레스타인 자치 실시 및 각종 행정사항 이양	보완적 이행협정
1995.09.28	오슬로 협정 II (Israeli-Palestinian Interim Agreement o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 요르단 강 서안지구 7개도시 및 인근마을로 자치지역 확대 • 자치권한 확대 • 6개월 이내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 이스라엘군 철수 후 팔레스타인 총선 및 자치정부 수립 • 팔레스타인 정치범 석방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1998.10.23	와이리버 협정 I (Wye River Memorandum, Wye River I)	• 요르단 강 서안지구의 13.1%지역에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 팔레스타인 현장에서 이스라엘 전복규정 폐기 • 팔레스타인 정치범 단계적 석방 • 팔레스타인 테러범에 대한 미국 CIA 감독하에 검거 및 무기회수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1999.09.04	와이리버 협정 II (The Sharm el Sheikh Memorandum, Wye River II)	• ‘와이리버 협정 I’에 따른 요르단 강 서안 지구 13% 중 이미 이스라엘 철군을 시행한 2%를 제외한 나머지 11% 철수 완료(2000년 11월까지) • 팔레스타인 정치범 350명 석방 • 팔레스타인 최종 지위 협상 2000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 한계) 2000년 9월로 설정된 최종지위협상 미타결	보완적 이행협정

2000.07	캠프 데이비드 II 협상 (Camp David II) ⁴⁴⁾	• 동예루살렘 귀속 문제 및 난민 문제 등 입장 차이로 결렬 • 2000년 9월말 제2차 인티파다 발생으로 사태 악화 및 평화협정 이행 교착	결렬
2003.04.30	4자 로드맵 (A Performance-based Road Map to a Permanent Two-State Solution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Quartet Roadmap)	• 미국, 러시아, UN, EU 등 4자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 평화 로드맵 제시 • 1단계는 폭력 중단 및 신뢰회복 단계 / 2단계는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준비 단계 / 3단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평화협정 체결 및 분쟁 종료 단계 • 한계) 협정 반대세력의 테러 및 가자지구 분쟁 발생, 이스라엘과 레바논 분쟁 등으로 로드맵 폐기	예비적 기초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2007.11.27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 (Annapolis Conference Joint Understanding on Negotiations)	•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3자 메커니즘 구성하여 2008년 말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노력 합의 •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4자 로드맵의 지속적 이행 의무 확인 • 미국은 이행 사항에 대해 감시 및 평가	예비적 기초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V. 결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따라 각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중 1993년 ‘오슬로 협정 I,’ 1995년 ‘오슬로 협정 II,’ 2003년 ‘4자 로드맵,’ 2007년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 등이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을 지닌다. ‘오슬로 협정 I,’ ‘오슬로 협정 II’의 경우 탈냉전 이후 1990년 초 이스라엘이 시리아, 요르단 등 중동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의제와 방향을 잠정 자치기간 실시 이후에 다시 논의

44) 중동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정착을 위해 1978년 9월 17일에 체결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과 구별하기 위해 ‘Camp David II’로 표기하였다.

하기로 하였다. 이는 핵심 쟁점사항보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분적인 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 간 상호 신뢰구축 형성과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없이 평화의 과정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 II이 결렬된 사례에서 잘 나타났다. 즉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을 지닌 평화협정에서 의제설정 방향, 상호 신뢰구축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실패가 최종적인 평화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003년 ‘4자 로드맵,’ 2007년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어 다시 예비적 기초협정의 성격을 지닌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체결된 예비적 기초협정의 반복은 결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다시 논의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국제적 중재 노력을 통해 평화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예비적 기초협정의 기본적인 사항인 의제설정 방향, 상호신뢰구축 및 공감대 형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2003년 ‘4자 로드맵,’ 2007년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와 같이 또다시 예비적 기초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비적 기초협정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쟁 당사자 간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상호 신뢰구축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평화협정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향후 다른 평화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신뢰구축 과정은 지속되어야 하며, 예비적 기초협정 단계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쟁점 의제를 설정하여 타협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중 1993년 ‘오슬로 협정 I,’ 1995년 ‘오슬로 협정 II,’ 1998년 ‘와이리버 협정 I’ 등이 실질적 기본협정의 성격을 지닌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경우 실질적 기본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및 재배치, 팔레스타인 자치 실시 및 각종 행정사항의 이양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동예루살렘 문제를 비롯하여 유대인 정착촌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문제들은 양측 간 정치, 민족, 종교, 영토 등의 갈등 사항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궁극적인 평화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도화와 관련하여 경제 등 각 사안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호 업무에 대한 조정 기구를 마련하였으나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기구로 볼 수 없다. ‘오슬로 협정 I’, ‘오슬로 협정 II’, ‘와이리버 협정 I’ 등 실질적 기본협정의 성격을 지닌 평화협정에서는 미국 등 국제적 중재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지만, 결국 분쟁의 핵심 쟁점사항을 타결하지 못하였고 협정의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실천할 제도화를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과정은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질적 기본협정 단계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을 이룬 뒤 쟁점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기구를 마련하는 제도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쟁점사항에 대한 타결없이 진정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사항이 다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중 1994년 ‘가자-예리코 협정,’ 1998년 ‘와이리버 협정 I,’ 1999년 ‘와이리버 협정 II,’ 2003년 ‘4자 로드맵,’ 2007년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 등이 보완적 이행협정의 성격을 지닌다. ‘가자-예리코 협정’은 ‘오슬로 협정 I’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팔레스타인 경찰과 이스라엘 군의 협력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된 후속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와이리버 협정 II’ 역시 ‘와이리버 협정 I’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정이다. ‘4자 로드맵’과 ‘아나폴리스 공동양해서’는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 II의 결렬에 따른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과정이 진척되지 않게 되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검증과 ‘오슬로 협정 I’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협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기본협정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행기구 등 제도화를 마련하지 못하여 보완적 이행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평화의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가까우며, 각각의 내부 정치구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협상 당사자의 입장변화가 심하게 바뀌었던 사례가 존재하여 향후에도 쉽게 진전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⁴⁵⁾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실질적 기본협정의 합의사항이 원활하

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실천사항에 대해 재합의하고,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합의 이행기구의 국제적 감증을 통해 이행기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재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은 부침의 연속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들을 통해 각각의 협정마다 고유의 특징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하나의 평화협정의 체결로 평화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실질적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평화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며, 불이행 사항이나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 보완적 이행협정과 같은 후속 협정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즉, 궁극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따른 단순히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과 ‘화해(reconciliation)’ 등 실천적 차원으로 진전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협정이 단순한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이나 협력을 넘어 제도화된 갈등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연속적 형태로 갈등 전환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이고 이행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 등으로 평화협정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 간 부단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상징적인 평화협정은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평화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단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45)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 (2009), p. 29.

【참고문헌】

- 김성한. “탈냉전기 미국의 국제분쟁 중재외교-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을 중심으로.” 『주요 국제문제분석』 제18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998).
- 문광건. “한반도 정전협정의 본질과 평화조약의 필요성.” 『국방정책연구』 제49권 (한국국방연구원, 2000).
- 박하윤. “대체적 분쟁해결(ADR)로써 Legal Negotiation에 관한 연구.” 『협상연구』 제17권 2호 (한국협상학회, 2014).
- 송대성.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중동 및 북아일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_____. 『한반도 평화확보』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5).
- 신범철.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 『외국 평화협정 사례 연구』 (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외교통상부. 『이스라엘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13).
- 장병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하마스.” 『중동연구』 제28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9).
- 전홍찬. 『팔레스타인 분쟁의 어제와 오늘』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 정상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편. 『중동정치 이해 1: 레반트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최영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과정: 2000년 캠프데이비드 협상 실패요인 분석 및 향후 아-팔 평화과정의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1년 12월 7일).
- _____. “이라크 전쟁과 이·팔 평화과정의 장래.” 『중동연구』 제22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3).
- 최철영.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 평화협정.” 『민주법학』 통권3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 홍미정. “오늘로 협정 과정과 정착촌 확장.”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3권 2호 (한국중동학회, 2003).
- Badran, Ramzi. “Intrastate Peace Agreements and the Durability of Pea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1, No. 2 (2014).
- Bailey, Sydney D. “Cease-Fires, Truces, and Armistices in the Practi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1, No. 3 (1977).

- Bell, Christine. "Peace Agreements-Their Nature and Legal Statu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0, No. 2 (2006).
- _____. *On the Law of Peace-Peace Agreement and the Lex Pacificatoria* (New York: Oxford Press, 2008).
- Bell, Christine, and Catherine O'Rourke. "Peace Agreements or Pieces of Paper? The Impact of UNSC Resolution 1325 on Peace Processes and Their Agreement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9, No. 4 (2010).
- Bennett, Scott D. "Integrating and Testing the Models of Rivalry Du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2, No. 4 (1998).
- Checkel, Jeffrey T. *Transnational Dynamics of Civil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Dajani, Omar. "Shadow or Shade? The Roles of International Law in Palestinian—Israeli Peace Talk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2 (2007).
- Fortna, Virginia Page. "Scraps of Paper-Agreements and the Durability of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7 (2003).
- _____. *Peace Time: Cease-Fire Agreements and the Durability of Pea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Harbom, Lotta, Stina Hogbladh, and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 and Peace Agreement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5 (2006).
- Hirschfeld, Yair. "Dynamics of Israel-Palestinian Negotiations." In Barry Rubin, Joseph Ginat and Moshe Ma'oz (eds.). *From War to Peace: Arab-Israeli Relations, 1973-199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4).
- Hogbladh, Stina. "Patterns of Peace Agreements-presenting New Data on Peace Processes and Peace Agreements." Paper Presented at the 47th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San Diego, CA, 22-25 March, 2006.
- Joshi, Madhav, Erik Melander, and Jason Michael Quinn, "Sequencing the Peace-How the Order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 Can Reduce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Postaccord Elec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0022002715576 573 (2015).
- Mansour, Camille. "The Palestinian-Israel: Peace Negotiations: An Overview and Assessment."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22, No. 3 (1993).
- Mitchell, C. R.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 Morriss, David M. "From War to Peace: A Study of Cease-Fire Agreements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United Natio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1996).

Quandt, William B. *Peace Process: American Diplomacy and the Arab-Israeli Conflict Since 1967*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Telhami, Shibley. "Camp David II: Assumptions and Consequences." *Current History*, Vol. 100, No. 642 (2001).

Vinjamuri, Leslie, and Aaron P. Boesenecker. *Accountability and Peace Agreements Mapping Trends from 1980 to 2006* (Geneva: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in Geneva, 2007).

Wallenstein, Peter, and Margareta Sollenberg. "Armed Conflicts Conflict Termination and Peace Agreements 1989-96."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4, No. 3 (1997).

Werner, Suzzane. "The Precarious Nature of Peace: Resolving the Issues, Enforcing the Settlement and Renegotiating the Te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3, No. 3 (1999).

〈인터넷 자료〉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1.cbs.gov.il/ts/ID58675465340b82/2001> (검색일: 2015년 8월 20일).

Palestinian Academic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www.passia.org/palestine_facts/facts_and_figures/0_facts_and_figures.htm#facts (검색일: 2015년 9월 2일).

UCDP Peace Agreement Dataset 1975-2011. http://www.pcr.uu.se/research/ucdp/datasets/ucdp_peace_agreement_dataset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UN Peacemaker: Peace Agreement Dataset search. <http://peacemaker.un.org/document-search> (검색일: 2015년 4월 20일).

UN.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181\(II\)](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181(II)) (검색일: 2015년 6월 19일).

Uppsala Universitet: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http://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 (검색일: 2015년 06월 20일).

USIP. <http://www.usip.org/category/publications/peace-agreements> (검색일: 2015년 4월 22일).

Yawanarajah, Nita, and Julian Ouellet. "Beyond Intractability: Peace Agreements." September 2003, <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essay/structuring-peace-agree> (검색일: 2016년 9월 5일).

[ABSTRACT]

An Analysis on Peace Agreements

The Israel-Palestine Peace Process

SooHwan Hwang | Korea University

A peace agreement is an extensive document of a legal and political nature, drafted to assure peace between two or more states. The agreement not only brings conflict to an end, but also institutionalizes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Nonetheless, the peace agreement itself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peace. It is not a single agreement that terminates disputes, but a series of agreements that are brought into force during the process of resolution. Hence, one needs to understand peace agreement as a process—beginning with the termination of conflict and culminating in a state of peace. Peace treaties signed in the process of peacebuilding may b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which they are concluded in. In this article, I categorize peace agreement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the preliminary basic agreement, the actual fundamental agreement, and the complementary practiced agreement. Categorizing peace agreements in this way would clarify and enhance our understanding about their nature. Peace agreements should be approached as management mechanisms for institutionalized conflicts that take on a strategic and consecutive form in order to allow transition.

Keyword: Peace Agreement, Preliminary Basic Agreement, Actual Fundamental Agreement, Complementary Practiced Agreement, Israel, Palestine

투고일: 2016년 10월 21일, 심사일: 2016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3일
--